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2. .
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4. 10. 31. 조정훈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 2024. 11. 1.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4. 12. 18.)

상정 · 제안설명 · 검토보고 · 대체토론 · 소위원회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25. 2. 6.)

상정 · 축조심사 · 의결(원안가결)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5. 2. 18.)

상정 · 소위심사보고 · 축조심사 · 찬반토론 · 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조정훈의원)

현재 사립학교의 경우 부모와 자녀가 동일 학교에 교원과 학생으로 근무 및 재학하고 있는 경우가 공립학교에 비해 많은 상황임. 또한,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서 교원자격증의 표시과목과 다른 교과를 담당

하는 교사도 다수 존재함.

이처럼 부모와 자녀가 동일 학교에 근무 및 재학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방지하고,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라 원활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인사 교류의 유연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사립학교 교원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다른 사립학교 또는 국내외의 교육기관·연구기관에 파견하고, 교육공무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5조의5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윤상열)

동일 학교에 부모와 자녀가 교원과 학생으로 근무 및 재학하는 경우 부모-자녀 관계를 악용하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교원이 교원 자격증에 표시된 과목과 다른 교과목을 담당하는 경우 학생들이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하지 못할 우려가 있음.

이에 개정안은 「사립학교법」에 사립학교 교원이 다른 사립학교 또는 국·공립학교를 포함한 교육기관 등에 파견근무할 수 있고, 교육공무원도 사립학교에 파견근무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국·공·사립학교 간 인사교류의 유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개정안이 적용될 경우, 법적 근거를 기반으로 한 ‘사립학교 간’, ‘국·공립-사립학교 간’ 파견을 통해, 동일 학교 내 교원과 자녀가 근무하거나 교과목 수요와 교원 수가 불일치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방지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각 학교별 임용권자에 의해 임용되는 사립학교 교원과 교육부장관의 위임에 따라 교육감에 의해 임용되는 국·공립학교 교원은, 서로 다른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임면절차 등이 적용되므로, 사립학교와 국·공립학교 간 파견근무에 적용할 인사관리, 복무 등의 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또한, 개정안은 사립학교에서 교육공무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법령에서 교육공무원의 파견근무는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파견근무) 및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파견근무)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파견 사유 및 기간 등 세부 사항은 「교육공무원임용령」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교육공무원의 파견근무에 대한 사항은 이를 고려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음.

개정안과 관련하여 교육부와 충청남도교육청은 교사-자녀 동일학교 근무·재학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방지하고 과원(상치) 교사 해소를 통해 원활한 교육과정 운영할 수 있도록, 사립학교 간, 국·공립-사립학교 간 인사교류의 유연성을 제고하려는 개정 취지에 공감하며, 해당 안에 이견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함.

한편, 서울특별시교육청은 학령인구 급감에 따른 교원 정원 감소 및 정원 관리를 고려할 필요가 있고, 교육활동을 직접 담당하는 교원이 학교 현장에서 인사이동 하게 되는 파견은 교원 수급과 관련되므로, 법률 개정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4. 대체토론 요지

특이사항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 문정복)

조정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원안대로 의결함.

6. 찬반토론 요지

특이사항 없음.

7. 심사결과

원안가결

8.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내용

개정안의 취지에 따르면 교원의 파견근무가 필요한 사립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므로,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도 교원의 파견근무가 가능한 사립학교에서 제외함.

또한, 개정안 제55조의5제2항은 사립학교 교원을 파견근무하게 하는 등의 권한을 임용권자가 학교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법 제53조의2에서 임용권자가 학교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

는 교원의 임용 사항으로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파견에 관한 내용은 규정하지 않고 있고, 공립학교 교원의 파견근무 근거 규정인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 및 교원의 파견근무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다른 입법례에도 파견 권한의 위임 규정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해당 조항을 삭제함.

※ 심사보고서 불임서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제1절에 제55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5조의5(파견근무) ① 사립학교(「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 교원의 임용권자는 교육활동의 교류, 업무 수행과 관련된 행정 지원이나 연수, 그 밖에 능력 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교원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다른 사립학교 또는 국내외의 교육기관·연구기관에 일정 기간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으며, 교육활동의 교류와 원활한 교육과정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교육공무원 및 다른 사립학교의 교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교원을 파견한 임용권자는 파견 사유가 없어지거나 파견 목적이 달성될 가능성이 없으면 해당 교원을 지체 없이 원래의 소속 학교로 복귀시켜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소속 교원을 파견근무하게 하거나 교육공무원 및 다른 사립학교의 교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하는 경우 그 사유·기간·절차, 파견근무 중 복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55조의5(파견근무) ① 사립학교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 교원의 임용권자는 교육활동의 교류, 업무 수행과 관련된 행정 지원이나 연수, 그 밖에 능력 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교원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다른 사립학교 또는 국내외의 교육기관·연구기관에 일정 기간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으며, 교육활동의 교류와 원활한 교육과정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교육공무원 및 다른 사립학교 교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할 수 있다.</u> <u>② 제1항에 따라 교원을 파견한 임용권자는 파견 사유가 없어지거나 파견 목적이 달성될 가능성이 없으면 해당 교원을 지체 없이 원래의 소속 학교로 복귀시켜야 한다.</u>

③ 제1항에 따라 소속 교원을
파견근무하게 하거나 교육공무
원 및 다른 사립학교의 교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하는 경우
그 사유·기간·절차, 파견근무
중 복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